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권자 직위별 위원 수 차등화
및 민간위원 포함〉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34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
3. 회부연월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징계권자의 직위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생략)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u>3명 이상</u> 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u>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u>	② ----- ----- ----- <u>3명 이상 7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징계권자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신 설>	1.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참모총장, 대장급 사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 <u>7명</u>
<신 설>	2. 장성급 군단장·사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u>5명</u>

<u><신 설></u>	3. <u>연대장·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명</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장교 2. 인사·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에서는 군인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 수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권자의 직위나 계급에 따라 징계위원 인원수를 달리 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¹⁾.

□ 징계대상자의 직위·계급이 높을수록 이에 대응하여 징계권자의 직위·계급이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조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 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기에 보다 많은

1)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수의 위원이 참여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징계대상자의 직위·계급에 따른 징계처분 파급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일률적으로 3명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안별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군인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심의 과정에서 군 외부의 객관적 시각이나 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징계권자의 직위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수를 차등화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대장 계급의 장교인 경우 징계위원회를 7인으로, 그 외 장성급 장교인 경우에는 5인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징계권자의 직위 및 징계처분의 파급효과에 상응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신중한 심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부 인력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외부의 객관적 시각 및 전문적 식견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징계위원 수 차등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 형식 및 체계 측면에서 일부 규정의 명확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① 안 제58조의2제2항에서 육군·해병대의 경우 연대장 직책을 대부분 여단장으로 대체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징계위원 수 규정을 직책 기준이 아닌 계급 기준²⁾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58조의2제2항 징계권자 직위에 따른 징계위원 수 규정]

1.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참모총장, 대장급 사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 7명
2. 장성급 군단장·사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명
3. 연대장·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명

□ 둘째, 대장·중장 계급의 장교에 대한 징계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가 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야 함.

그러나 현재 대장 계급 장교의 수가 7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인원을 징계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대장 계급 장교를 징계위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행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징계위원회 운영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임³⁾.

2) 예) 제1호: 국방부장관 및 대장 계급의 장교 : 7명
제2호: 제1호 규정 이외의 장성급 장교 : 5명
제3호: 영관급 이하 장교 : 3명

□ 셋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과거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들이 논의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2024.9.23.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⁴⁾」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⁵⁾.

② 2025.11.25.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⁶⁾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포함안과 군인으로만 구성하는 안을 두고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군인으로만 구성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⁷⁾한 바 있음.

□ 국방부는 징계위원 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 대장·중장 계급의 징계시 사실상 모든 대장 계급 장교를 징계위원회 출석을 위

3)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을 포함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대장 계급 장교가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므로 대장급 장교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작전 수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임.

4)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2, 2200734호)

5) 당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한 이유로는, ① 징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의 자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② 도서·산간·격오지 부대의 경우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특정 인원이 반복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징계권은 원활한 부대 지휘를 위하여 지휘관에게 부여된 지휘권의 일종인 바 외부 민간위원의 의결권 행사로 지휘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 바 있음.

6)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37호), 박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88호),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44호),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85호)

7) 2026.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 2215114호)

해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도서·산간·격오지 부대에서는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징계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